

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을  
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

2016년 1월 28일

마포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 
전문위원 김용범

#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

## 1. 안건명

- 마포구 서교동 359번지 흥익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6년 1월 15일(金), 마포구청장

## 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16년 1월 21일(木)

## 4. 제안 이유

-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의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.

## 5. 주요현황

- 위 치 : 마포구 서교동 359번지
- 시행면적 : 2,281㎡
- 추진경위
  - 2014.10.08 : 흥익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변경계획(안) 방침(구청장)
  - 2015.02.06 : 흥익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재조성 계획 방침(부구청장)
  - 2015.03.26 : 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
  - 2015.05.14 : 주민대표 간담회 실시
  - 2015.07.20 :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

- 2015.04.03~09.29 : 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 
시행 중
- 2015.10.26 :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보고회
- 2015.11.12 :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입안
- 2015.12.10 ~ 24 : 주민열람 및 관련부서 협의(14일간)

## 6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

### 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(변경)(안)

시설명	시설의 종류 (공원의 세분)		위 치	면 적 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기 정	변 경		기 정	변 경	증감		
공원	어린이공원	문화공원	마포구 서교동 359	2,218	2,230.1	증)12.1	건고299 (1963.4.26)	홍익공원

※ 1967. 4. 7. 구획정리에 따른 공원 면적 증가(12.1㎡)

### 나. 공원 변경결정(안) 사유서

시설명	내 용	변 경 사 유
홍익공원	공원시설의 세분 - 당초 : 어린이공원 - 변경 : 문화공원	- 전문 교육시설(대학) 입지의 지역적 특성으로 상업시설과 밀접하고 어린이 이용이 전무하여 어린이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공원을 지역을 알리는 관광 및 문화의 명소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소통과 화합의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함

## 7.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마포구 서교동 359번지 홍익어린이공원 도시계획 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임.

- 대상지는 건설부고시 제299호(1963.4.26) 최초 공원결정 되었으며, 2014년 1월에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합동 공원안전 일제조사에 따른 공원 안전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마포 흥익어린이공원이 공원세부 변경 및 재조성사업에 선정 되었음.
- 2014. 10. 8 흥익어린이공원 문화공원 변경계획(안) 구청장 방침, 2015.3.26 문화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, 2015년 5월과 7월에 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대표 설명회를 실시하여 의견 수렴.
- 2015.12.10~12.24(14일간)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한 바,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주민대표 설명회시 제기된 많은 의견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.
- 따라서 본 사업은 전문 교육시설 입지의 지역적 특성으로 상업시설과 밀접하고 어린이 이용이 전무하여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한 어린이공원을 문화공원으로 재조성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(변경)을 하여 흥대지역의 문화를 알리는 관광명소 및 시민들의 소통과 휴식공간으로 거듭 날수 있도록 주변여건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내외국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